긴급 입찰공고 사유서

1. 추진근거

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】
제35조(입찰공고의 시기) ⑤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.(개정 2018.12.04)

1. **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**
   제4항의 1.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
   제4항의 2.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
   제4항의 3.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·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   제4항의 4.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
2. **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**

2. 추진사유

○ 글로벌프런티어 사업기간(2020.1-12)과의 종료기간 일치에 따라 긴급히 후속 추진되는 당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사업수행 및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수행기간 확보 필요

* 연구재단-진흥원 협약체결('20.6.1-12.31)이 지연됨('20.6.22)에 따라 사업추진의 시급성 추가 발생

** 제출일 마감 전 일 기준 40일에서 10일로 단축 공고 예정

이에, 글로벌프런티어 성과확산 및 기술사업화_종료연구단 기술마케팅 용역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,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5조 제5항 1호에 의거하여 본 사업은 긴급 입찰공고를 시행하고자 함.

2020. 06. 22.

담당자 : 서계영 (인)

부서장 : 윤정근 (인)